##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안내

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「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」와 「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」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습니다. (소득세법 제164조, 동법 제164조의3)

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, 복지급여 · 지원금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

7월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 (거주자의 사업소득)를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- 아 래 -

-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: 분기 → 매월
  - ☞ 7월 지급분 : 8월 말일까지 제출(이후 매월 제출)
    - \* 2분기(4~6월) 지급분 :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
- ②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: 반기 → 매월
  - ☞ 7월 지급분 : 8월 말일까지 제출(이후 매월 제출)
    - \* 상반기(1~6월) 지급분 :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
- ❸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
  - \* 종전과 같이 반기별(1월, 7월) 제출
- 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(☎ 국번없이 126)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(☎(053)661-7456~7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